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전현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81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6.

발 의 자 : 전현희 · 김용만 · 소병훈
김병주 · 이건태 · 백혜련
문진석 · 이성윤 · 염태영
박주민 · 박지원 · 김용민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 ·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,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고,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올해 300만명에 육박하여 국민 인구수의 5.8%에 달할 예정으로, 2030년에는 체류 외국인이 350만명으로 증가하여 국민 인구수의 8%를 넘을 것으로 예측됨

한편 출입국 · 이민정책은 비자, 거주관리, 국적, 사회통합,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등과 밀접히 연계된 정책으로 현재 국내외 정책 환경에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인재 유치 및 외국인에 대한 사회포용 달성 등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이민정책 수립이 필수적임.

이를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출입국

심사와 국경 관리, 불법체류 대응, 안보 및 외국인 범죄, 유학생·우수 인재 유치, 국적, 난민, 지역경제 등 출입국·이민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중심으로 개편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지역 발전과 민생경제 성장 및 사회 포용을 아우르는 선진적 이민 정책 구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이와 관련,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은 출입국·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한편, 위원의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장 및 위원 구성원 자격에 관한 변경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(안 제8조).

법률 제 호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국무총리”를 “법무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무총리”를 “법무부장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장”을 “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외국인정책위원회) ① 외 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<u>국무총 리</u>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 다.	제8조(외국인정책위원회) ① --- ----- ----- <u>법무부</u> <u>장관</u> ----- ----- 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 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, 위원장은 <u>국무총리</u> 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가 된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법무부장관</u> -- ----- -----.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<u>장</u>	1. ----- ----- <u>차관 또는 차관급</u> <u>공무원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